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94

발의연월일: 2020. 7. 29.

발 의 자:김경협·서영석·김승원

정춘숙 · 양향자 · 김정호

박영순 · 최인호 · 박성준

강병원 · 정성호 · 윤재갑

송옥주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민·소상공인 등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·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,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있으나,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.

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·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.

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(안 제10조제1항).
- 나. 새마을금고·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(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).
- 다. 새마을금고·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(안 제167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67조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관련 감면 등) ① -----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 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회사법 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 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(20톤 미 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 록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등 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<u>2020</u> 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 년 12월 31일-----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 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• 영어 자금・영림자금(營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. 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87조(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제87조(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면) 면) ①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(중앙회는 제외하며, 이하 제1호 및 제2호

에서 "신용협동조합"이라 한다)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.

- 1. 신용협동조합이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- 2. 신용협동조합이 「신용협동조 합법」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.

## 3. (생략)

②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(중앙회는 제외하며,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

1
2024년 12월 31일
2024년 12년 31년
2
<u>2024년 12월 31일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

"새마을금고"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.

- 1. 새마을금고가 「새마을금고 법」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.
- 2. 새마을금고가 「새마을금고 법」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 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 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한다.

3. (생략)

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「조세 특례제한법」제72조제1항을 적 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<u>2020</u>

1
<u>2024년 12월 31일</u>
<b>-</b> .
2
<u>2</u> 024년 12월 31
<u> </u> 일
3. (현행과 같음)
1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
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
<u>2024</u>

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 제 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 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.

년 12월 31일	_
	_
	_
	_
	_
	_
	_
	_